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4. 9. 1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9월 13일 회부

다. 상 정 일 자 : 제108회(임시회) 제3차 행정위원회(2004. 9. 1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홍성배)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의 개정(2003.12.30.)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자치구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함(안 제10조)
-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을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3조의2)
-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(2003.12.31.)에 맞추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함(안 제14조의2 제2항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부과·징수에관한조례)
- 예산조치 : 비예산
- 입법예고(2004.3.10.~2004.3.31.)결과 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※ 주요 토의과제는 작성 생략, 쟁점사항이 없음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찬재)

- 현행 조례 제10조 삭제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개선·보완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삭제
- 조례 제13조의2 신설안은 지방세법 제51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 개정에 따라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과징수 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현행 조례 제14조의2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, 심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7. 7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 이유

- 지방세법의 개정(2003.12.30.)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의 송달방법과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자치구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함(안 제10조)
- 나.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을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3조의2)
- 다.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(2003.12.31.)에 맞추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함(안 제14조의2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부과·징수에관한조례)
- 나. 예산조치 : 비예산
- 다. 입법예고(2004.3.10.~2004.3.31.)결과 : 의견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※ 주요 토의과제는 작성 생략, 쟁점사항이 없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.

제14조의2 제2항 중 “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”을 “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10조(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) 구세의 납세의 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 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 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13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 법 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.
제14조의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(생 략)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1.~5. (생 략) ③~⑥ (생 략)	제14조의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(현행과 같 음) ②.....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 1.~5. (현행과 같음) ③~⑥ (현행과 같음)